

제 109회

이사회 회의록

2018. 07. 13.

학교법인동명학원

2171111 /

정기

학교법인동명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8년 제109회)

회의소집 통지일자 : 2018. 07. 05.			
이사정수	11인	재적이사	11인

1. 회의 개최 일시 : 2018. 07. 13(금) 14:00
2. 회의 개최 장소 : 학교법인동명학원 이사장실
3. 참석자(9명) : 이사장-최기채, 이사- 심판구, 이무석, 신신우, 정소지,
민상식, 주영화, 서순팔. 이선주
4. 불참이사(2명) : 안태숙, 임경섭
5. 회의안건
 - 제1호의안 제109회 이사회의 회기결정(안) 심의의 건
 - 제2호의안 교원휴직(안) 심의의건
 - 제3호의안 학교법인동명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심의의 건
6. 의결사항
 - 제1호의안 제109회 이사회의 회기결정(안) 결의
 - 제2호의안 교원휴직(안) 결의
 - 제3호의안 학교법인동명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결의
 - 기타사항

7. 회의 진행내용

의 장(최기채) : 심판구 이사님 개회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심판구) : (개회 기도하다.)

의 장(최기채) : 제109회 이사회회의는 재적이사 11인중 9인이 참석하였으므로 법인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108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은 제108회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김현철) : (전화 회의록 낭독하다.)

의 장(최기채) : 행정실장이 낭독한 제108회 이사회회의록에 대해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원) : 없습니다.

의 장(최기채) : 이사 전원이 제108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시므로 전화 회의록 심의를 마치고, 제1호의안인 제109회 이사회회의 회기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이사회회의 회기는 2018년 7월 13일 하루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사(주영화) : “동의” 합니다.

이 사(민상식) : “재청” 입니다.

의 장(최기채)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원) : 없습니다.

의 장(최기채)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9회 이사회회의 회기는 2018년 7월 13일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의안인 교원휴직(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주교장선생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 장(이선주) : 김민영 국어교사가 2018년7월30일부터 2019년2월28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의 장(최기채) : 교장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정소지) :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 합니다.

이 사(이선주) : “재청” 입니다.

의 장(최기채) :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원) : “없습니다.”

의 장(최기채)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동명고등학교 교원휴직(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시면 “예” 하십시오.

이 사(전 원) : “예”

의 장(최기채) : 아니면 “아니오” 하십시오.

이 사(전 원) : 대답없음.

의 장(최기채) :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2018학년도 동명고등학교 교사 휴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의안인 학교법인동명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김현철) : 2016년 5월29일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되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107회 이사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을 결의하였고, 이번 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위촉되신 외부위원은 사립학교법 제62조의2에 따라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 장(최기채) : 행정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외부위원 및 교원위원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정소지) : 우리 법인 정관 제70조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신 정갑주 전 법원장님을 외부위원으로 교감이명석 교무부장 한주섭을 교원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 사(신신우) :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 합니다.

이 사(심판구) : “제청” 합니다

의 장(최기채) :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원) : “없습니다.”

의 장(최기채)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정갑주 전 법원장을 학교법인동명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교감 이명석 교사 한주섭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하자 하시면 “예” 하십시오.

이 사(전 원) : “예”

의 장(최기채) : 아니면 “아니오” 하십시오.

이 사(전 원) : 대답없음.

의 장(최기채) :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정갑주 전 법원장을 학교법인동명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교감 이명석과 교사 한주섭을 교원위원으로 위촉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1월 17일부터 달라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김현철) :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임직원도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외부강의동 신고 보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 장(최기채) : 이사님들께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회의 하시느라 여러 이사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서명날인을 대표할 이사님을 제가 지명을 하면 박수로 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정소지 이사님” “이선주 이사님” “최기채 이사장님 ”

이 사(전 체) : 박수로 선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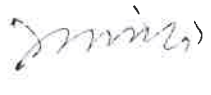
의 장(최기채) : 금번 이사회회의록에 서명날인을 대표하실 이사님들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체) : 없습니다” .

의 장(최기채) :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제109회 이사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은 서명 날인 하여 주시고 이사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일시 : 2018.07.13. 15:00

) 학 교 법 인 동 명 학 원

이사장 최 기 채 

이 사 안 태 속


이 사 심 판 구 

이 사 이 무 석 

이 사 신 신 우 

이 사 정 소 지 

이 사 민 상 식 

이 사 주 영 화 

이 사 임 경 섭

이 사 서 순 팔 

이 사 이 선 주 

감 사 오 수 택

감 사 염 인 열 